



(삼겹살전문)
철뚝집

[정보공개서 등록번호] 20180720
[정보공개서 최초 등록일] 2018.07.23.
[정보공개서 최종 등록일] 2025.12.18

철뚝집 정보공개서

(주)브라더푸드시스템은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제7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조 제1항에 따라 귀하에게 이 정보공개서를 드립니다.

20

(주)브라더푸드시스템

<주 의 사 항>

이 정보공개서는 귀하께서 체결하려는 가맹계약 및 해당 가맹사업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으므로 그 내용을 정확하게 파악한 후에 계약체결 여부를 결정하시기 바랍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가맹희망자에게는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충분히 검토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일정한 기간이 주어집니다. 따라서 이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은 날부터 14일(변호사나 가맹거래사의 자문을 받은 경우에는 7일)이 지날 때까지는 가맹본부가 귀하로부터 가맹금을 받거나 귀하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수 없습니다.

이 정보공개서는 법령이 정한 기재사항을 담고 있는 것에 불과하며 그 내용의 사실 여부를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 모두 확인한 것은 아닙니다. 또한, 귀하께서는 어디까지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에 따라 가맹사업을 운영하게 되므로 정보공개서의 내용에만 의존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귀하께서 가맹계약서에 서명하는 순간부터 그 내용에 구속됩니다. 따라서 충분한 시간을 갖고 정보공개서나 가맹계약서의 내용을 검토하시고 기존 가맹점사업자를 방문하여 얻은 정보에 근거하여 가맹본부의 신뢰성을 판단하도록 하십시오.

가맹사업은 법률, 회계, 경영 등 다양한 분야의 지식이 필요한 분야이므로 가맹거래사 등 전문가의 자문을 받는 것을 권장합니다. 귀하가 과거 사업경력이 없는 경우 관련 업종에서 경험을 쌓아 경영 수행 능력을 갖추는 필요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사업 초기에 많은 자금이 소요되므로 귀하의 재정상태를 확실히 점검한 다음 창업에 임하시기 바랍니다.

[가맹본부의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134번길 22-1, 101호(복정동)

[가맹본부의 대표전화번호] : 1577-5295

[가맹본부의 대표팩스번호] : 031-707-3445

[가맹사업 담당부서 및 전화번호] : 031-707-3444

[목 차]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II. 가맹본부의 가맹사업 현황

III.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현황

[정보공개서를 읽기 전에]

- ◇ 정보공개서는 가맹본부의 자료에 기초하여 작성된 것이므로 귀하가 실제 운영할 사업 내용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사전에 **충분히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고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경우에 가맹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 정보공개서의 내용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법률 지식이 필요합니다.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은 가맹 본부 측에 충분한 설명을 요구하고 필요한 경우 **가맹거래사나 변호사 등 전문가에게 검토를 요청**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 ◇ 가맹본부로부터 제공받은 정보공개서와 공정거래위원회에 등록된 정보공개서를 비교하여 다른 내용이 있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http://franchise.ftc.go.kr>)에 알려 주시기 바랍니다.
- ◇ 정보공개서 기재사항에 허위·과장된 정보가 포함된 경우에는 그 사실을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정보공개서와 함께 귀하가 창업하려고 하는 **점포 예정지 인근 10곳의 정보(가맹점명, 소재지, 전화번호)**를 제공받아야 합니다. 인근 점포를 직접 방문하셔서 가맹본부를 신뢰할 수 있는지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가맹본부와 상담하기 전 **'창업희망자가 알아야 할 10가지 필수사항'**과 **'창업희망자를 위한 가맹사업 계약체결 안내서'**를 확인하시고 **가맹사업법 관련 조항도** 찾아보십시오.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정보마당' - '교육자료'
가맹사업거래홈페이지(<http://franchise.ftc.go.kr>) - '법령 및 제도' - '법령자료'
- ◇ 가맹본부와 분쟁이 발생한 경우 정보공개서는 중요한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서를 계약서와 함께 잘 보관하십시오.

I. 가맹본부의 일반 현황

1. 가맹본부의 일반 정보

당사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상호	사용 브랜드	주 소			
(주)브라더푸드 시스템	철뚝집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134번길 22-1, 101호(복정동)			
	법인설립등기일	사업자등록일	대 표 자	대표전화번호	대표팩스번호
	2018,05,29	2018.05.29	박정환	031-707-3444	031-707-3445
	법인등록번호	131111-0520328	사업자등록번호	529-86-01014	

2.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특수관계인의 일반 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관계	이름/상호	영업표지	주 소		
대표이사	박정환 / (주)브라더푸드 시스템	철뚝집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134번길 22-1, 101호(복정동)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박정환	1577-5295	031-707-3445	
사내이사	오정숙 / (주)브라더푸드 시스템	철뚝집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134번길 22-1, 101호(복정동)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박정환	1577-5295	031-707-3445	
사내이사	김수빈 / (주)브라더푸드 시스템	철뚝집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134번길 22-1, 101호(복정동)		
		대표자	대표번호	팩스번호	
		박정환	1577-5295	031-707-3445	

3. 가맹본부의 인수·합병 내역

당사는 최근 3년 동안 다른 기업을 인수·합병한 적이 없습니다.

4. 가맹희망자가 앞으로 경영할 가맹사업(앞으로 『철뚝집』 이라 합니다)의 내용

귀하는 앞으로 아래 표에 따른 가맹사업을 경영하게 됩니다.

구 분	내 용	추가 설명
명 칭	철뚝집	
상 호	철뚝집 ○○점	
서비스표	 <p>(삼겹살전문) 철뚝 집</p>	출원번호: 제 4120160011851 호 등록번호: 제 4103794860000 호
	철뚝집	출원번호: 제 4120160011849 호 등록번호: 제 4120160031033 호

브랜드 소개

SINCE 1969

성남의 역사와 궤를 같이하는 '철뚝집'은 남녀노소 누구나 부담 없이 즐기는 냉동 삼겹살 전문점입니다.

'싸고 푸짐하고 맛있는 고기'를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맛 보이고 싶은 철뚝집만의 고집스러움으로 지난 50여 년의 시간을 함께 해왔습니다.



브랜드 스토리 - 철뚝집

‘철뚝집’은 1969년 아주 작은 가게에서부터 시작되어 지금껏 성남을 대표하는 삼겹살 집으로 자리매김한 (주)브라더푸드시스템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1968년 서울시의 무허가 건물 일소에 따른 철거민 정착 주택단지로 지목된 계획도시가 바로 ‘성남’ 입니다. 도시가 완성되기도 전에 철거민들의 반강제적인 집단 이주로 혼란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던 성남은 1973년에 이르러서야 비로소 독립된 시로 승격될 만큼 도시로서는 매우 짧지만 아픈 역사를 지니고 있습니다.

1969년 말, 성남 구시가지 옛 버스종점 근처 골목 어귀에서 처음 문을 연 ‘철뚝집’은 성남의 역사와 함께 해온 명실상부한 성남의 대표 맛집입니다.

모두가 배고프던 시절, 저렴한 가격으로 든든하게 배를 채우길 원했던 서민들의 마음은 철뚝집이 지금껏 고수해 온 **‘싸고 푸짐하고 맛있는 고기’**를 판매하는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여전히 싸고 푸짐하고 맛있는 고기와 더불어 어려웠던 시절 추억의 맛도 함께 선물하는 **‘냉동삼겹살 전문점 철뚝집’**으로 성장 발전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5. 최근 3개 사업연도의 대차대조표 및 손익계산서

1)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재무상황 요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연도	자산총계	부채총계	자본총계	매출액	영업이익	당기순이익
2022년	495,846	311,315	184,530	1,442,645	152,767	133,248
2023년	627,196	388,141	239,054	1,825,116	64,892	54,524
2024년	286,384	138,621	147,763	1,943,723	66,099	-91,291

2) 당사의 최근 3년 동안의 가맹사업 관련 매출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위 1)의 재무상황과 동일합니다.

6. 가맹본부의 임원 명단 및 사업경력

당사의 임원 내역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련여부	이름	현 직위	사업경력		
			기간	직위	담당업무
가맹사업 관련임원	박정환	대표이사	2020.01.27. ~ 현재	대표이사	업무총괄
	오정숙	대표이사	2020.01.27. ~ 현재	사내이사	업무총괄
	김수빈	감사	2020.01.27. ~ 현재	사내이사	업무총괄

7.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

당사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임직원 수는 다음과 같습니다.

시점	임원수(명)		직원수(명)
	상근	비상근	
2023년 12월 31일	3	0	7

8. 가맹본부 및 가맹본부의 특수관계인의 가맹사업 경영 사실

당사 및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을 경영하였거나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9.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

당사가 귀하에게 사용을 허용하는 지식재산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명칭	권리내용	등록 및 등록신청 여부(일자)	출원 및 등록번호	출원인	존속기간 (예정)만료일
 철뚝집	상표 서비스표	출원 : 2016.03.14.	출원번호: 제 4120160011851 호	윤성건	2026.12.05
		등록 : 2016.12.05.	등록번호: 제 4103794860000 호		

- ▶당사의 상표 등을 사용하는 권리는 상표권자(윤성건)로부터 상표사용에 대한 허락을 받았습니다.
- ▶귀하가 허용된 범위를 벗어나 당사의 상표(특허)를 사용할 경우에는 민형사상 책임을 질 수 있으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당사의 지식재산권 내용은 한국특허정보원 특허정보검색서비스(<http://www.kipris.or.kr/>)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Ⅱ. 가맹본부의 『철뚝집』 가맹사업 현황

1. 해당 가맹사업을 시작한 날 : 2018년 6월

2. 『철뚝집』의 연혁

가맹본부 상호	영업표지	대표자	가맹사업 경영 기간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주)브라더 푸드시스템	철뚝집	윤건, 윤성건	2018.06~2018.04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성남대로 926번길 12, 2층 204호 (야탑동, 금탑프라자)
			2018.04~2020.01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성대로 132, 101동 202호 (성남동, 수산리치빌)
		박정환	2020.01~현재	경기도 성남시 분당구 산성대로 132, 101동 202호 (성남동, 수산리치빌)

3. 『철뚝집』 업종

영업표지	업종	
철뚝집	대분류	소분류(주요상품)
	한식	삼겹살, 우삼겹

4. 최근 3년간 사업연도 말 『철뚝집』 가맹점 및 직영점의 총 수

지역	2022.12.31.			2023.12.31.			2023.12.31.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가맹점수	직영점수
전체	20	20	-	30	30		37	37	
서울	1	1	-	2	2		2	2	
부산	-	-	-				1	1	
대구	-	-	-						
인천	1	1	-	1	1		1	1	
광주	-	-	-						
대전	-	-	-	1	1		1	1	
울산	-	-	-				1	1	
세종	-	-	-						
경기	18	18	-	23	23		26	26	
강원	-	-	-	1	1		2	2	
충북	-	-	-	1	1		1	1	
충남	-	-	-						
전북	-	-	-						
전남	-	-	-	1	1		1	1	
경북	-	-	-						
경남	-	-	-				1	1	
제주	-	-	-						

5. 최근 3년간 『철뚝집』 가맹점 수

연도	연초	신규 개점	계약 종료	계약 해지	명의 변경	연말
2022	18	4	2	-	4	20
2023	20	14	3	1	1	30
2024	30	10	-	3	2	37

6. 『철뚝집』 외에 가맹본부가 경영하거나 특수관계인이 경영하는 가맹사업 현황

당사는 『철뚝집』 외 가맹사업을 경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7.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직영점 매출은 제외)과 그 산정기준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지역	2024년말 가맹점수	2023년 가맹점사업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연간 평균 매출액		연간 평균 매출액(상한)		연간 평균 매출액(하한)		
		연간 평균 매출액	면적 3.3m ² 당	상한	면적 3.3m ² 당	하한	면적 3.3m ² 당	
전체	37	337,370		1,183,202		1,353		24곳 산출
서울	2	해당없음						5곳 미만
부산	1	해당없음						5곳 미만
대구								
인천	1	해당없음						5곳 미만
광주								
대전	1	해당없음						5곳 미만
울산								
세종								
경기	26	383,433		1,183,202		1,353		19곳 산출
강원	2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북	1	해당없음						5곳 미만
충남								
전북								
전남	1	해당없음						5곳 미만
경북								
경남	1	해당없음						5곳 미만
제주								

▶당사의 가맹점 37곳 중 매출액이 집계되지 않은 가맹점 3곳 및 6개월 미만 운영 가맹점 10곳을 제외한 가맹점 24곳의 매출액을 기준으로 산정하였습니다. 따라서 위의 평균매출액은 가맹점 24곳의 평균매출액임을 알려드립니다. 또한, 가맹점들의 면적이 집계되지 않아 면적당 매출액은 기재하지 않았습니다.

- ▶매출액은 가맹점사업자별로 물품공급액, 시장상황, 점주의 노력 등에 차이가 있기 때문에 달라질 수 있습니다. 따라서 위 표에 나타난 매출액이 귀하가 올릴 수 있는 미래 수입과 같지는 않다는 점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9조 제3항·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 제1항에 따라 당사가 매출액 추정에 사용한 자료는 당사의 본사 사무실에 비치하고 있습니다. 귀하가 본사로 방문하여 소정의 신청서를 작성하시면 열람이 가능합니다.

8. 『철뚝집』 가맹점의 평균 영업기간

『철뚝집』의 바로 전 사업연도 말 현재 영업중인 가맹점사업자의 평균 영업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연도	영업 중인 가맹점 수	평균 영업기간
2024	37	868일

9. 가맹지역본부(지사, 지역총판)의 일반 정보


당사는 『철뚝집』 가맹점 관리를 위하여 별도의 지역사무소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10. 광고·판촉 지출 내역

당사는 2024년 『철뚝집』 홍보를 위한 광고·판촉비용으로 지출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구분	수단	기간	지출 비용(단위: 천원, 부가세 미포함)			비고
			합계	가맹본부	가맹점	
광고비		(비공개)	86,000	 (비공개)		 (비공개)

11. 가맹금 예치

귀하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기 위하여 가맹금을 지급하는 경우, 농협은행에 예치하여야 하며 자세한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예치기관 상호	담당 지점 또는 부서	주 소	전화번호
농협은행	성남위례지점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창곡동 508	031-741-0358

▶귀하는 가맹금을 당사의 소정서식을 작성하여 농협은행에 계약 체결 후 3일 이내에 예치신청 하여야 합니다. 예치방법은 별첨4의 「가맹금 예치 신청서」를 작성한 후, 귀하의 「신분증」과 「가맹금 예치 신청서」를 지참하여 가까운 농협은행 영업점을 방문하여 가맹금을 예치하시면 됩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맹금 예치와 관련하여 가맹점사업자가 알아두어야 할 사항

1. 가맹점사업자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가맹계약 체결일부터 2개월이 지난 경우에는 이 가맹예치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됩니다.
2.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가맹금의 지급이 보류됩니다.
 - 가.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소를 제기한 경우
 - 나. 가맹점사업자가 예치가맹금을 반환받기 위하여 알선, 조정, 중재 등을 신청한 경우
 - 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금반환 사유가 발생하여 가맹본부를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한 경우
3. 2번의 가~다의 조치를 취한 경우 그 사실을 예치기관에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치가맹금은 가맹본부에 지급될 수 있습니다.

11.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등의 체결 내역

당사는 서울보증보험과 가맹점사업자피해보상보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Ⅲ. 가맹본부와 그 임원의 법 위반 사실

1.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의 시정조치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및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여 공정거래위원회 또는 시·도지사로부터 시정조치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2. 민사소송 및 민사상 화해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가맹사업거래와 관련하여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또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거나,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하는 죄와 관련된 민사소송에서 패소의 확정판결을 받았거나, 민사상 화해를 한 사실이 **없습니다**.

3. 형(刑)의 선고

당사와 당사의 임원은 정보공개일 현재 최근 3년 동안 사기·횡령·배임 등 타인의 재물이나 재산상 이익을 영득 또는 이득 하는 죄를 범하여 형의 선고를 받은 사실이 **없습니다**.

IV. 가맹점사업자의 부담

1. 영업개시 이전의 부담

귀하가 『철뚝집』 가맹사업을 시작하기 위해서는 아래와 같은 금액이 소요됩니다. 이 금액에는 귀하가 지불하여야 하는 [점포의 임대비용, 직원채용비용 등]이 제외되어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운영하게 될 점포의 위치 및 규모, 내부 설비의 종류, 영업 시작까지 걸리는 시간 등이 상이하므로 실제 지불하는 금액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귀하가 부담하여야 할 대가는 매우 다양하나 크게 다음의 세 가지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구분	지급대상	예치 대상 여부	비고
최초 가맹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계약이행 보증금	가맹본부	예치	확정 금액
기타 비용	가맹본부 또는 다른 업체	예치하지 않음	추정 금액

1) 최초가맹금

최초 가맹금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포함)

최초가맹금내역	금 액	포함내역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가맹비	[6,600]	가맹점 운영권 부여에 대한 대가	가맹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계약 체결 후 4개월이 경과한 경우에는 모두 반환 안됨	가맹점운영권을 부여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개점 전 교육비	[4,400]	가맹점개설 및 운영과 영업활동에 관한 교육비	가맹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교육시작 1일 이전에 계약이 종료된 경우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합 계	[11,000]				

2) 계약이행보증금

귀하가 당사에 지급하여야 할 계약이행보증금은 계약 종료 시, 귀하가 계약 종료 후 절차이행 의무를 완료한 시점에 아래의 계약이행보증금에서 당사에 대한 제반 채무를 공제한 잔액이 귀하에게 반환됩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 없음)

구분	금 액	지급기한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	비고
계약이행보증금	[3,000]	가맹계약 체결 후 3일 이내	물품대금이나 경영지도비, 손해배상액 등	가맹계약 해지시 정산 후 반환


3) 예치가맹금의 범위와 그 금액

가맹사업거래의공정화에관한법률에 따라 귀하가 예치하여야 하는 가맹금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금 액 (단위 : 천원)	부가세
최 초 가 맹 금	[11,000]	포함
계 약 이 행 보 증 금	[3,000]	없음
합 계	[14,000]	-

4) 기타비용

귀하가 그 밖에 지급하여야 하는 비용을 자세히 나누면 다음 표의 내용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단위: 천원 / 부가세 포함 / 99m² (30평) 기준)

구 분	지급대상	금 액	지급기한	면적 3.3m ² 당 금액	반환조건	비 고
합 계		63,800~69,300		2,126~2,310		
인테리어 (점포 내장공사)	미정	42,900	인테리어 공사 개시 3일 전	1,430	공사 전 계약취소	
간판	미정	4,400	주문제작 3일 이전	146	제작 전 계약취소	
설비/집기	협력업체 외	11,000~16,500	물품공급 5일 이전	366~550	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초도물품	가맹본부 외	5,500	물품공급 5일 이전	183	물품공급 전 계약취소	
가맹점사업자 개별 시공 시, 3.3 m² 당 [330/부가세포함] 을 디자인 검토비로 기간을 정하여 청구할 수 있음						

위 표의 금액은 당사가 그 동안의 가맹점 운영 경험을 토대로 추정한 것으로 실제 지불 금액과는 다를 수 있습니다.

- ▶초도물품비는 가맹점별 점포 규모가 상이하므로 점포 상황에 따라 본사와 가맹점사업자 간 상호 협의에 의해 변경 가능합니다.
- ▶상기 비용은 설비의 품질, 선택사항에 대한 추가 및 점포 건물에 따른 철거, 소방설비, 냉·난방 설비, 도시가스, 닥트 등이 필요한 경우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외부 인테리어(기와) 시공시 별도의 소요비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점포 사정에 따라 상이)
- ▶자세한 비용은 계약체결 시 매장실측 후 별도로 제공·안내하고 있습니다.

5) 가맹점 입지 선정 주체 및 선정 기준

당사는 신규 가맹점 입지를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선정주체	선정기준
가맹점사업자	1)가맹점사업자의 판단과 책임으로 가맹점의 입지를 조사·선정하며 이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2)입지선정과 관련하여 가맹본부는 해당지역의 행정구역상의 구분, 상권의 특성, 주요한 근린 시설, 업종 특성에 따른 매출성향, 인근 가맹점의 영업지역 등을 고려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조언을 할 수 있다. 3)가맹본부가 조언한 경우라도 최종 의사결정은 가맹점사업자가 하며, 가맹점의 매출액이나 수익액은 가맹점사업자의 관리능력이나 여건의 변화에 의하여 변동될 수 있다. 4)가맹점사업자의 가맹점 개점에 관련된 인·허가 사항의 준비나 상가규약 등의 확인은 가맹점사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입지선정의 지연으로 인해 영업의 개시가 늦어지는데 따라 발생하는 비용은 당사가 책임지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와 그 종업원의 교육 및 계약·채용 기준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교육을 받거나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에 피고용인을 채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교육 기준	계약·채용 기준
가맹점사업자	국외여행에 결격사유가 없을 것	점포의 임차 또는 보유가 가능하고 관계법령에 따른 인·허가 취득에 문제가 없을 것
종업원	근면·성실하고 서비스 마인드를 소지한 사람	만 18세 이상일 것

7)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설비 등의 내역 및 공급방법·공급업체

『철뚝집』 가맹점을 운영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물품이 필요합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8) 당사는 가맹금 분납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가맹점사업자는 일시금으로 가맹금을 포함한 개설비용을 당사에 지급하여야 하나 분납여부 및 비율에 대해 당사와 협의를 통해 결정할 수 있습니다.

2. 영업 중의 부담

1) 비용부담

귀하가 영업을 시작한 후에도 다음과 같은 비용을 부담하여야 합니다. 특히 광고 부담금에 대한 세부 부담기준은 정보공개서 [28~29]쪽에 나와 있습니다.

(단위: 천원 / 부가세 포함)


구분	금액	지급대상	지급기한	반환조건	반환될 수 없는 사유
특별/보수 교육비	해당교육에 소요되는 실비청구	가맹본부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3일 이내	교육 시작 전 교육이 취소된 경우	본사의 노하우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교육이 시작되면 반환되지 않음.
광고비	전체광고 시 총광고비용 중 가맹본부부담액 50%제외 금액 (단, 제품 광고와 가맹점 모집 광고를 동시에 하는 경우에는 가맹본부부담 60%) -각 가맹점사업자간 균등 부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광고활동이 취소된 경우	광고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판촉비	1)공동판촉 시 기획비용은 본사 부담, 제작비용은 가맹점사업자 부담 2)개별판촉 시 가맹점사업자가 비용부담		청구를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판촉활동이 취소된 경우	판촉활동 실시 후 반환되지 않음
로열티	매출액의 3% (부가세 별도)		익월 5일 이내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종료된 경우	가맹점이 영업지도 및 관리를 받기 위해 가맹본부에게 지급하는 소멸성 대가
점포환경 개선비용	가맹본부 부담비용을 제외한 나머지 비용		VII.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환경개선 공사 전 계약이	환경개선 공사 이후 반환되지 않음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참조	종료된 경우	
지연이자	연 10%		연체일 익일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가맹본부의 귀책사유로 계약이 해지 된 경우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물품 대금, 계약서상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 반환 되지 않음

- ▶전국단위 판촉에 소요되는 총비용 중 가맹점사업자간 분담 비율은 본인에게 제공되는 판촉물 부수 내지 개수에 따라 개별적으로 산정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개별광고 내지 개별판촉을 하고자 할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개별광고 내지 개별판촉을 기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광고 내지 판촉을 기획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2) 구입요구 품목 구입을 통한 가맹금 지급

가맹점사업자가 필수품목(강제, 권장)의 거래를 통해 당사에 지급하는 대가 중 적정한 도매가격을 넘는 대가(이하 "차액가맹금"이라 한다)의 2024년도 평균 규모는 다음과 같습니다.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가맹점사업자에 대한 감독

당사는 귀하의 영업 상황에 대하여 일정한 감독을 실시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감독 항목	내용	시기	비고
설비관리	가맹점의 각 종 설비 관리 상태 점검	필요시	문의 : 031-707-3444
위생 청소상태 관리	가맹점의 환경, 청결 등 위생상태 점검		
회계처리	매출자료에 대한 회계 조사 및 점검		
재고관리	실재 재고 수량과 장부상 재고 비교		

- ▶귀하는 위 자료의 확인과 기록을 위해 당사 직원이 출입, 조사하는 것을 허용하여야 하며, 또한, 당사가 본 계약이 정하는 각종 영업 및 전산자료 등의 조회 또는 출력력을 요청 하는 경우에는 이

에 적극 협조하여야 합니다.

3. 계약 종료 후의 부담

1) 계약연장이나 재계약 과정의 추가 부담

귀하가 당사와 계약이 종료된 후에 연장(갱신, 재계약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경우 당사는 갱신 비용을 받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본부의 사정에 의한 계약 종료 시 조치사항

가) 가맹본부가 가맹사업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경우 기존 가맹점사업자와의 계약승계 여부

당사가 『**철뚝집**』 가맹사업을 타인에게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당사는 양도예정일 2개월 전에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가맹점사업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서면으로 당사에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여부를 통지하지 아니하면 승인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통지를 하거나 승인 여부 통지를 하지 아니하면 가맹사업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사와 양수인 간의 가맹사업 거래관계는 그대로 양수인과 가맹점사업자 간에 유지되는 것으로 간주됩니다.

만일,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통지일로부터 1개월 내에 승인 거부 통지를 한 경우에는 가맹사업의 양도일을 기준으로 당사와 가맹점사업자간의 가맹사업 거래관계는 종료되며,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을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나) 가맹본부가 사용을 허락한 지식재산권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가 가맹점운영을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에게 사용을 허가한 상표권, 특허권 등 지식재산권이 존속기간의 만료, 소유권(사용권) 변경, 효력 상실 등의 사유로 더 이상 지식재산권을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당사의 책임과 비용으로 이를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며, 이로 인해 가맹점사업자에게 손해가 발생하면 가맹점사업자와 협의하여 이를 배상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대체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지 못하거나 대체수단이 만족스럽지 못할 경우에는 가맹점사업자는 체결한 가맹계약을 해지하실 수 있으며, 이 경우 귀책사유 등을 감안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다) 가맹본부가 『철뚝집』 가맹사업을 중단하는 경우 조치사항

당사는 원칙적으로 모든 가맹계약이 종료될 때까지 가맹사업을 중단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상치 못한 사정으로 당사가 가맹사업을 중단하게 될 경우에는 이를 미리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지하고 협의하여 계약을 해지할 것입니다. 이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남은 가맹계약기간과 계약해지의 귀책사유를 고려하여 일부 가맹금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또한,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와의 잔여계약기간 내에 영업표지사용권한을 최대한 보장하며, 필요 시에는 대체브랜드를 제공합니다. 공급물품의 경우 당사가 지정하는 업체를 통해 공급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조치합니다.

3) 가맹점 운영권 양도 과정의 부담

귀하가 운영하는 『철뚝집』 가맹점 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양도할 경우에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할 비용은 없습니다. 다만 양수인이 부담할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① 양수인이 양도인의 권리를 승계할 경우

양수인은 영업 양도일을 기준으로 잔여기간에 해당하는 영업표지 사용비, 개점 전 교육비 전액, 계약이행보증금 전액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영업표지 사용비의 지급은 해당 양수·양도가 양도인의 최초 가맹계약기간 중에 발생한 경우에 한합니다.

② 양수인이 신규 가맹계약 체결을 원할 경우

구 분	금 액 (단위 : 천원)	부가세
최 초 가 맹 금	[11,000]	포함
계 약 이 행 보 증 금	[3,000]	없음
합 계	[14,000]	-

4) 계약 종료 후의 조치 사항

귀하는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당사의 브랜드임을 알 수 있는 어떠한 식별기호도 사용하여서는 아니 됩니다. 또한 귀하는 계약종료 시 지체 없이 당사의 상호·간판·서비스표 등 영업표지의 사용을 중단하고 이를 철거 내지 제거하여야 하며, 당사가 제공한 설비, 기기, 전산시스템 등 영업관련 자산을 당사에게 반환하고 운영매뉴얼 기타 가맹점 운영 규칙 등은 당사에게 반환하거나 폐기하여야 합니다. 만일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에는 귀하는 위약벌로서 **계약 종료일로부터 1일 당 금 삼십만원(₩3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지급한 계약이행보증금의 정산잔액과 정산서를 받을 때까지는 상호·간판 등의 철거 내지 제거, 영업관리 자산의 반환의무 이행을 연기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 의무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비용은 계약종료에 책임 있는 당사자가 부담합니다.

V. 영업활동에 대한 조건 및 제한

귀하는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하게 되면 **사업의 동일성 유지**를 위하여 **영업활동에 일부 제한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기재된 내용을 신중히 살펴본 후 계약 체결 여부를 판단할 것을 권장합니다.

1. 물품 구입 및 임차

귀하가 『**철뚝집**』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필요한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하는 자와 거래해야 할 품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물품 구입 및 임차 현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나) 주요 품목별 직전 사업연도 공급가격의 상·하한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2) 특수관계인의 경제적 이익

귀하가 [철뚝집]을 시작하거나 경영하기 위하여 당사가 거래할 것을 강제하는 부동산·용역·설비·상품·원재료 또는 부재료 등의 구입 또는 임차와 관련하여,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거래 요구 또는 권장의 대가 내역

- 1) 당사는 『철뚝집』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 또는 권장하는 대가로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 2) 당사가 『철뚝집』 가맹점사업자로 하여금 상품 또는 용역을 특정한 거래상대방에게 거래하도록 강제하는 대가로 당사의 특수관계인은 특정한 거래상대방으로부터 경제적 이익을 수취하고 있지 않습니다.

3. 상품·용역, 거래상대방, 가격 결정

1)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당사의 서비스표권을 보호하고 상품 또는 용역의 동일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귀하는 지정된 상품·용역만을 판매하여야 하며 그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제한 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별첨 3] 참조	왼쪽에 기재된 상품 이외 승인 받지 않은 상품은 판매할 수 없음	1회 위반 : 구두경고 2회 이상 위반 : 2회 이상 서면 시정요구 후,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계약 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되지 않은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상품·용역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2) 거래상대방(고객)에 따른 상품·용역의 판매 제한

거래상대방(고객)	제한내용 및 조건	위반 시 책임
경쟁업체 물품공급이 중단된 다른 가맹점사업자	당사 또는 당사의 지정업체로부터 공급받은 상품 및 제품	상품 및 서비스 공급중단 또는 계약해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에게 제한된 상품·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가맹본부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 않을 경우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하여야 합니다.

▶당사는 경영환경의 변화 등으로 필요한 경우 위 표에 기재된 거래상대방(고객) 외에도 판매 제한을 가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동의를 미리 얻고 있습니다.

3) 가맹점사업자의 가격 결정의 제한

당사는 귀하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의 가격을 정하여 이를 따르도록 권장하도록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 원)	가격 통보 방법	비 고
[별첨3] 참조		변경시 통보 (유무선,이메일등)	2018년 6월 기준

▶귀하가 위 표에 기재된 권장가격과 다른 가격으로 상품, 용역을 판매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서면으로 당사와 협의하여야 합니다.

4.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보호

1) 독점적·배타적 영업지역 설정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체결 시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설정하여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당사 및 당사의 계열회사는 가맹계약기간 중에는 정당한 사유없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 동일한 업종의 직영점·가맹점을 추가 개설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업종의 범위 및 동일한 업종에 해당하는 당사의 영업표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동일한 업종 범위	동일한 업종 영업표지	
	가맹본부	계열회사
삼겹살, 우삼겹 등을 이용한 상품을 제공·판매하는 가맹사업	철뚝집	해당사항 없음

2) 영업지역의 설정 기준

당사는 영업지역을 다음과 같이 정하고 있습니다.

설정기준	설정방법
점포를 중심으로 반경 500미터 (대형마트, 백화점 등 특수상권 제외)	가맹계약서에 영업지역 표시 (지도별첨 또는 상권명 기재)

3) 가맹계약 갱신과정에서 영업지역을 재조정할 수 있는 사유 및 절차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4에 의거 가맹계약 갱신 시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해서 가맹점사업자와 합의를 통하여 기존 영업지역을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지역 재조정 사유	재조정 절차	동의를 얻는 방법
① 재건축, 재개발, 신도시 건설 등 대규모개발로 인하여 상권의 급격한 변동이 발생하는 경우 ② 해당 상권의 거주인구 또는 유동인구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③ 소비자의 기호변화 등으로 인하여 해당 상품·용역에 대한 수요가 현저히 변동되는 경우 ④ 위의 사유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영업지역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이 현저히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재조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영업지역 변경(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게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 영업지역 변경 완료	영업지역 변경(안)을 서면으로 통지하고 30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15일 이내에 영업지역 재조정 완료 (신규 점포 입점 가능)

4) 영업지역 밖의 고객에게 상품이나 용역을 판매하는 데에 따르는 제한

▶귀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와 약정한 영업지역을 준수하시기 바랍니다. 영업지역을 벗어나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에 속한 고객에게 영업활동을 하는 경우 가맹본부는 다음의 조치를 취하여 가맹점사업자 상호간의 이해관계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의 고객과 거래하는 경우 가맹본부가 두 가맹점사업자 간의 보상금 지불에 대한 중재안을 제시하는 행위

둘째, 영업지역을 침해받은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정 조정 요구가 있는 경우 매출액 현황 조사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셋째, 특정 가맹점사업자가 다른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을 반복적으로 침해하여 『**철뚝집**』 영업표지 이미지에 심각한 손해를 가한 경우 그 가맹점사업자에게 행위의 시정을 요구하고 손해배상액을 청구하는 행위

5)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의 대리점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철뚝집] 가맹점사업자의 영업지역 내에서 대리점, 다른 영업표지를 사용한 가맹점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6) 가맹점사업자가 취급하는 상품이나 용역 등이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 다른 유통채널을 통해 공급되는지 여부

당사는 온라인, 홈쇼핑, 전화권유판매 등을 통해 가맹점사업자가 판매하는 상품이나 용역과 대체재 관계에 놓일 수 있는 동일·유사한 상품이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습니다.

5. 가맹본부의 온라인·오프라인 판매에 관한 사항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연간 국내 매출액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매출액 비중

(단위: %)

연도	국내 온라인·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오프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온라인 판매 매출액 비중	
	가맹점	기타 오프라인	자사 온라인몰	기타 온라인②
2024	100%	-	-	-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국내 판매상품 중 온라인과 오프라인 전용 판매상품의 비중

(단위: %)

연도	오프라인 전용상품 비중	온라인 전용상품 비중
2024	100%	-

6. 계약기간, 계약의 갱신·연장·종료·해지·수정

1) 가맹계약 및 갱신 기간

『**철뚝집**』 가맹사업의 계약기간은 계약체결일로부터 **[2]**년이며, 가맹계약 갱신시 계약기간은 계약 갱신일로부터 **[1]**년입니다.

2) 계약 연장이나 재계약 또는 계약 종료에 필요한 절차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4조에 따라 귀하에게는 가맹계약의 갱신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가 최초 계약일로부터 10년간 주어집니다. 구체적인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순서	기간 (계약만료일 : D-day)
----	-----------------------

①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였습니까? 예→②, 아니오→⑦	D-180 ~ D-90
② 3)에서 정한 계약갱신 거절 사유에 해당합니까? 예→④, 아니오→③	D-180 ~ D-90
③ 가맹본부가 계약조건 변경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⑤, 아니오→A	D-180 ~ D-90
④ 가맹본부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거절 사유를 적은 서면으로 거절 통지를 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A	①+15일 이내
⑤ 가맹점사업자가 계약조건 변경에 동의하였습니까? 예→C, 아니오→⑥	.
⑥ 변경된 계약조건이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입니까? 예→B, 아니오→D	.
⑦ 가맹본부가 계약갱신을 하지 않겠다는 사실을 서면으로 통지하였습니까? 예→B, 아니오→⑧	D-180 ~ D-90
⑧ 가맹점사업자가 계약갱신 또는 계약조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였습니까? 예→E, 아니오→A	D-60일 이전
A. 종전과 같은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B. 계약기간이 만료되는 날 계약 종료	D-day
C.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	D-day
D.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조건을 바꾸어야 함(가맹본부가 계약 변경을 강행할 경우 불공정거래행위에 해당할 수 있음)	-
E. 양자가 합의하여 계약을 만료하거나 변경된 조건으로 다시 가맹계약 체결(민사상 문제로 가맹사업법에서 특별하게 제한하는 규정 없음)	-

3) 계약 갱신 거절(종료) 사유

당사가 가맹계약의 갱신요구를 거절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갱신요구 거절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가맹금이나 물품대금 등의 금전지급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28조 2항
○ 다른 가맹점사업자에게 통상적으로 적용되는 계약조건이나 영업방침을 수락하지 아니한 경우	
○ 가맹점 운영에 필요한 점포·설비의 확보나 법령상 필요한 자격·면허·허가의 취득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판매하는 상품, 제품 또는 용역의 품질을 유지하기 위하여 필요한 제조공법 또는 서비스기법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가맹사업을 영위하는 데 필수적인 지식재산권 보호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	
○ 가맹점사업자에게 실시하는 교육·훈련의 준수에 관한 사항을 위반한 경우(다만, 교육·훈련 비용이 같은 업종의 다른 가맹본부가 통상적으로 요구하는 비용보다 뚜렷하게 높은 경우는 제외)	

4) 계약 해지 사유 및 그 절차

당사가 귀하와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 세금을 납부하지 못해 체납 처분을 당하거나, 주요 재산에 압류·경매 신청이 된 경우	29조 1항
○ 당사의 사전 동의 없이 당사의 영업표지가 인쇄된 소모품과 비품 등을 제작하거나 인쇄한 경우	
○ 귀하의 위법행위로 가맹점의 상표에 대한 신용 또는 상품 및 제품판매에 손해를 끼친 경우	
○ 당사의 상호 또는 상표를 불법부당하게 사용하거나, 당사의 상호 또는 상표 아래 당사의 상품 또는 제품을 가맹사업 목적과 다른 방향으로 판매하는 경우	
○ 가맹계약서 제3조 제2항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 귀하의 고의 또는 과실로 점포의 임차권이 종료된 경우	
○ 가맹계약서 제12조 제5항의 로열티에 대한 규정을 위반하여 2회 이상 시정요구를 당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13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영업을 개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예치가맹금의 지급에 필요한 증명서류 또는 확인서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계약서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교육의 이수를 해태하거나 지체하는 경우	
○ 가맹계약서 제15조 및 제16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의 영업비밀을 누설하거나 계약 존속기간동안 경업을 하는 경우	
○ 가맹계약서 제18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당사의 시정요구를 받고도 3일 이내에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계약서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품질기준과 영업관리기준을 3회 이상 위반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19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의 동의없이 임의로 상품 또는 제품을 변경·추가하거나 당사에 의해 변경된 메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계약서 제20조 제3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물품대금의 지급의무를 2회이상 지체하는 경우	
○ 가맹계약서 제20조 제5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 또는 당사가 지정한 업체로부터 공급받은 물품을 고객판매 용도 외 타 가맹점에 공급하거나 당사와 경쟁관계에 있는 자에게 공급하는 경우	
○ 가맹계약서 제22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점매입을 한 경우	
○ 가맹계약서 제24조 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당사의 사전동의 없이 5일 이상 점포운영을 방치하는 경우	
○ 가맹계약서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운영매뉴얼을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계약서 제26조의 규정에 의한 시설의 교체나 보수 요청을 따르지 아니하는 경우	
○ 당사와 약정한 광고 및 판촉활동을 성실히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 가맹계약서 제32조 및 제34조를 위반하여 당사의 사전동의 없이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 및 가맹점을 위탁경영하게 한 경우	
○ 다수의 고객으로부터 동일한 불만사항을 접수받고도 시정하지 아니하는 등, 당사의 가맹점에 대한 이미지를 손상시키는 행위가 지속되는 경우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4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5조에 따라 당사는 가맹계약을 해지하려는 경우에는 귀하에게 서면으로 2개월 이상의 유예기간을 두고 계약의 위반 사실 및 이를 시정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한다는 사실을 2회 이상 통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

지 않은 계약해지는 무효가 됩니다.

다만, 가맹사업법 시행령 제15조의 계약해지 사유에 해당되는 아래의 경우에는 2개월 이상의 유예 기간이나 2회 이상의 서면통지 없이 계약서에 따른 절차를 거쳐 계약이 해지될 수 있으므로 주의 하여야 합니다.

즉시계약 해지 사유	관련 계약조문
① 귀하에게 파산 신청이 있거나 강제집행절차 또는 회생절차가 개시된 경우	29조 2항
② 귀하가 발행한 어음·수표가 부도 등으로 지불 정지된 경우	
③ 천재지변, 중대한 일신상의 사유 등 귀하가 더 이상 가맹사업을 경영할 수 없게 된 경우	
④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정처분을 받거나 법원 판결을 받음으로써 가맹본부의 명성이나 신용을 뚜렷이 훼손하여 가맹사업에 중대한 장애를 초래한 경우 가. 위법사실을 시정하라는 내용의 행정처분 나.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과징금·과태료 등 부과처분 다. 위법사실을 처분사유로 하는 영업정지 명령	
⑤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되는 법령을 위반하여 자격·면허·허가 취소 또는 영업정지 명령(15일 이내의 영업정지 명령을 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등 그 시정이 불가능한 성격의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 다만, 법령에 근거하여 행정처분을 갈음하는 과징금 등의 부과 처분을 받은 경우는 제외	
⑥ 귀하가 당사의 시정요구에 따라 위반사항을 시정한 날부터 1년(계약갱신이나 재계약된 경우에는 종전 계약기간에 속한 기간을 합산한다) 이내에 다시 같은 사항을 위반하는 경우. 다만, 당사가 시정을 요구하는 서면에 다시 같은 사항을 1년 이내에 위반하는 경우에는 2개월 2회의 서면통보의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락한 경우는 제외	
⑦ 귀하가 가맹점 운영과 관련된 행위로 형사처벌을 받은 경우	
⑧ 귀하가 뚜렷이 공중의 건강이나 안전에 급박한 위해를 일으킬 염려가 있는 방법이나 형태로 가맹점을 운영하고 있으나, 행정청의 시정조치를 기다리기 어려운 경우	
⑨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5) 계약 수정의 사유, 사전 통보 여부 및 동의 절차

당사는 계약기간 중에 계약서의 내용을 변경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귀하의 동의를 얻어 계약 조건을 수정할 수 있습니다.

계약 수정 사유	관련 계약조문
○ 관련법 제정 또는 개정에 따른 경우	35조 2항
○ 양 당사자 사이의 합의에 따른 수정	

재조정 절차	동의 절차
계약 수정 사유 발생 → 당사 담당팀 검토 → 수정계약서(안) 작성 → 가맹점사업자에 서면 통지 → 가맹점사업자의 동의 → 수정 완료	수정 계약서(안)를 서면으로 통지하고 2주 이내에 동의 여부 회신 -동의를 있는 경우 수정계약서에 정한 날부터 효력 발생 -동의하지 않는 경우 기존 계약 내용 적용

7.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 양도 · 상속 및 대리행사

1) 가맹점운영권의 환매

당사는 가맹점운영권 환매제도를 시행하고 있지 않습니다.

2) 가맹점운영권의 양도

귀하가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게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하고, 당사의 승인이 있어야만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양도 가능 조건	양도 절차	비 고
양수인이 당사가 정한 가맹점 운영 기준을 준수할 것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양도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양수인 면담 포함, 15일 가량 소요) → 승인 여부 통지 → 양도인, 양수인, 가맹본부의 양수, 양도 계약 체결(양수인이 당사에 가맹비 지급) → 양수인 교육 → 가맹점 운영권 이전 완료	문의 : 031-707-3444

▶당사가 양도를 승인하면 양수인은 양도인의 잔여계약기간 동안 모든 권리의무를 승계하게 되며 양수인은 교육비 및 계약이행 보증금을 납입하여야 합니다.

▶다만, 양수인이 원할 경우 당사는 양수인과 신규 가맹계약을 맺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신규가맹 계약일 지라도 가맹점 모집비용, 개점행사비 등이 일반적인 신규가맹계약보다 적게 소요될 경우에는 비용 소요액에 상응하는 가맹금을 당사와 협의하여 지급하실 수 있습니다.

3) 가맹점운영권의 상속, 대리행사, 위탁 등

가맹점운영권은 원칙적으로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한 귀하에게 주어집니다. 따라서 개인사정 등으로 가맹점운영권을 다른 사람에게 대리행사하게 하거나 상속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당사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상속인은 가맹점 영업을 상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상속개시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상속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다만, 상속인이 미성년자,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에 해당

하거나 이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가맹계약은 종료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가능 여부(조건)	이전범위	절 차	기타 의무사항
상속	가맹본부 승인 시 가능	모든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검토 → 승인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이전 완료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대리 행사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권리의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검토 → 대리행사 가능 여부 통지 → 가맹점운영권 대 리행사 가능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업무 위탁		가맹점사업자가 지정한 범위 내의 업무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신청 → 당사검토 → 업무위탁 가능 여부 통지 → 업무위탁 가능	교육수료 및 교육비 지급

8. 경업금지, 영업시간 제한,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1) 경업금지의 범위

당사는 계약기간 동안 **국내 전 지역 내에서** 귀하가 『**철뚝집**』 과 동일한 업종의 영업을 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귀하가 그러한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그 사실을 통지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업금지 되는 업종	경업허가 절차	비 고
삼겹살, 우삼겹을 이용한 상품을 제공·판매하는 가맹사업	가맹점사업자가 서면으로 경업허가 신청 → 당사 담당팀 검토 (시장조사 포함, 30일 가량 소요) → 허가 여부 통지 → 완료	문의 : 031-707-3444

2) 영업시간 및 영업일수 제한

당사는 『**철뚝집**』 의 영업일수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다만, 귀하는 특정일 또는 일정기간 동안 가맹점을 열지 못할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가맹본부의 승인을 얻어야 하고, 이를 3일 전부터 매장 입구에 게시하여 고객이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업시간	영업일수	비 고
10:00 ~ 24:00	26일/월 이상, 주6일 이상 영업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5조 제9호에 따라 귀하가 정당한 사유 없이 연속하여 7일 이상 영업을 중단한 경우 가맹계약이 즉시 해지 될 수 있으므로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권장 종업원 수 및 영업장 근무 여부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포(영업장)의 종업원 및 근무 형태를 제한하고 있지 않습니다.

4) 가맹본부의 영업장 관리·감독

당사는 귀하가 운영하는 가맹점(영업장)을 비정기적으로 관리·감독을 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관리·감독항목	감독 절차	빈도 및 시기	담당팀	비 고
매장 청결	담당자 매장 방문 → 청결도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시	본사 관리부	본사방침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별도 공지함
친절도	담당자 매장 암행방문 → 주문 → 친절도 확인 → 완료	필요시	본사 관리부	
품질 관리	담당자 매장 방문 → 품질 확인 → 관리표 작성 → 가맹점사업자 확인 및 서명 → 완료	필요시	본사 관리부	

9. 광고 및 판촉 활동

1)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부담 기준

당사는 『**철뚝집**』 영업표지 이미지 제고 및 매출액 증대를 위한 전국 단위의 광고 및 판촉 활동을 위해 필요한 비용을 가맹점사업자와 나누어 부담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성 격	부담비율		분담절차	비 고
		본사부담	가맹점부담		
광고 전체 행사	상품광고	광고비 50%	광고비 50% (각 가맹점사업자간 균등 부담)	광고 계획 공고 → 귀하에게 광고비 부담내역	대중매체 광고 명절, Day

	상품광고 + 가맹점 모집광고	광고비 60%	광고비 40% (각 가맹점사업자간 균등 분담)	통지 → 통지받은 날로 부터 15일 이내 완납 → 광고 시행	이벤트 행사 (전국행사)
	가맹점 모집광고	전액부담	없음		
판촉행사	개별행사	행사에 따라 달라짐		행사계획 공고 → 가맹점 부담액 제시 → 가맹점 의 행사 참여 결정 → 행사 시행 → 종료 후 최종분담금 확정	

▶전국단위의 광고일 경우 가맹점부담액은 광고비 중 일부를 광고시행 직전 분기의 각 가맹점사업자의 총매출액 비율에 따라 분담합니다. 지역 광고일 경우에는 해당 지역 내 가맹점사업자가 가맹점부담액 부분을 분담합니다.

2) 가맹점사업자의 독자적 광고·판촉 활동

- ▶개별 가맹점사업자는 독자적으로 광고·판촉 활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가맹사업의 통일성 및 브랜드 이미지를 위하여 당사의 사전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 ▶가맹점사업자가 개별광고 내지 개별판촉을 하고자 할 경우 당사는 가맹점사업자가 실시하고자 하는 개별광고 내지 개별판촉을 기획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당사가 광고 내지 판촉을 기획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은 가맹점사업자가 부담합니다.

10. 영업비밀 보호에 관한 사항

당사의 영업비밀이란, 공공연히 알려져 있지 않고 독립된 경제적 가치를 가지는 것으로서, 가맹본부의 노력에 의하여 비밀로 유지된 생산방법, 판매방법, 그 밖에 영업활동에 유용한 기술상 또는 경영상의 정보를 말합니다.

귀하는 계약체결 및 가맹점 운영상 알게 된 가맹본부의 영업비밀을 계약기간은 물론 계약종료 후에도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 됩니다. 가맹본부의 허락 없이 교육과 세미나자료 기타 가맹점운영과 관련하여 영업비밀이 담긴 관계서류의 내용을 인쇄 또는 복사할 수 없습니다.

당사의 영업비밀을 무단으로 유출할 경우 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해 처벌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11. 가맹계약 위반 시 손해배상에 관한 사항

가맹계약의 당사자는 상대방의 계약위반이나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가맹계약서상 구제 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가맹계약 체결 후, 가맹점 개점 이전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사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일방적인 변심에 의해 가맹계약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다음에 해당하는 기간 내에 다음의 금액을 위약벌로서 상대방에게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가맹금 감면조건이라도 최초가맹금으로 명시된 금액을 기준으로 합니다.

-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이내 - 최초가맹금의 10%
- 계약 체결일로부터 3일 경과 10일 이내 - 최초가맹금의 30%
- 계약 체결일로부터 10일 경과 가맹점 개점일 이전 - 최초가맹금의 50%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상 자점매입 금지 규정을 위반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위해 필수적인 물품을 자점매입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금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상 계약종료 후의 조치 의무를 준수하지 않은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계약 종료일로부터 1일 당 **금 삼십만원(₩3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가맹계약서상 비밀유지 의무 또는 경업금지 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한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금 일천만원(₩10,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가 당사의 사전 승인 없이 제3자에게 영업을 양도하거나 가맹점을 위탁경영하게 하는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금 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가맹계약이 계약기간 만료 전 종료될 경우, 가맹점사업자는 당사에 위약벌로서 **금 오백만원(₩5,000,000)**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 가맹점사업자는 가맹본부 또는 그 소속 임원의 위법행위 또는 가맹사업의 명성이나 신용을 훼손하는 등 사회상규에 반하는 행위로 인해 손해가 발생한 경우 가맹본부에게 본 계약 상 구제수단 외에 별도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VI. 가맹사업의 영업 개시에 관한 상세한 절차와 소요기간

1. 상담·협의 과정에서부터 가맹점 영업 시작까지 필요한 절차 요약

귀하가 당사와 가맹계약을 체결할 경우 상담일로부터 실제 가맹점이 개설될 때까지 걸리는 시간과 필요한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내용	소요기간	소요비용
합 계	-	60일 내외	IV.가맹점사업자의 부담 / 1. 영업개시이전의 부담 참조
가맹희망자 문의	- 전화문의 접수 - 희망지역 확인, 담당자 배정	D-60	
사업 설명·상담	-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제공 - 인근 10개 가맹점현황문서 제공 - 가맹희망자 상담	D-59	
점포개발 및 상권분석 실시	- 입지선정 - 입지 주위 점포 정보 제공	필요시 실시	
최종 협의	- 개설 승인	D-45	
가맹계약 체결	- 계약 체결	D-44	
가맹금 예치	- 농협은행에 가맹금 예치	D-44(1일)	
실내외 공사착수	- 도면협의 및 공사일정 확인	D-43	
교육 실시	- 출·퇴근 집체교육	D-38(3일)	
인테리어 공사	- 공사 실시	D-37~35(15일)	
지역홍보	- 지역판촉 행사 실시	D-15~개점전날	
점포 개설	- 가맹점 개설 및 영업시작	D-day	

위 표에 따른 소요기간은 평균적인 가맹점을 기준으로 작성된 것으로, 협의 과정에서 시장상황 등에 따라 그 기간이 늘어나거나 줄어들 수 있습니다.

귀하는 당사와 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의 자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자문이 필요하신 경우는 본사에 소속되어 있거나 업무 연관성이 있는 가맹거래사나 변호사를 제외하고 귀하께서 선택하신 가맹거래사나 변호사에게 정보공개서 및 가맹계약서 등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시기 바라며, 특히 정보공개서에 대하여 자문을 받으신 경우에는 계약체결일이 정보공개서 제공 14일 후에서 7일 후로 단축됩니다.

2. 가맹본부와의 분쟁 해결 절차

가맹계약 당사자는 계약의 해석 또는 계약에 의해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관하여 다툼이 있을 경우 법적 절차에 이르기 전까지 우선적으로 대화와 협상을 통해 분쟁을 해결하도록 합니다.

당사와 가맹점사업자 사이에 분쟁이 발생할 경우 가맹거래사 또는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의 의견을 청취하고 조정을 받거나 다른 법령에 의하여 설치된 중재기관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조정이 되지 않거나 중재 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 이에 대한 소송은 가맹본부 또는 가맹점사업자의 주소지나 가맹점소재지를 관할하는 법원으로 합니다. 다만, 상호합의 하여 관할법원을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따라 귀하는 가맹사업거래의 분쟁에 관한 사항을 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 설치된 **가맹사업거래분쟁조정협의회**에 조정해 줄 것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락처 : 1588-1490, 홈페이지 : <http://www.kofair.or.kr>)

Ⅶ. 가맹본부의 경영 및 영업활동 등에 대한 지원

1. 점포환경 개선 시 비용지원 내역

당사는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및 시행령 제13조의2 규정에 의거 다음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 한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고 있으며, 가맹점사업자의 점포환경개선에 소요되는 비용의 일부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부담비율 및 구체적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다만,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2조의2 규정에 의거 가맹점사업자의 자발적 의사에 의하여 점포환경개선을 실시하는 경우 및 가맹점사업자의 귀책사유로 인하여 위생·안전 및 이와 유사한 문제가 발생하여 불가피하게 점포환경개선을 하는 경우에는 비용분담을 하지 않습니다.

점포환경 개선 사유	가맹본부 부담 비용 항목	가맹본부 부담 비용 비율	지급절차	비용부담 제외 사유
-점포의 시설, 장비, 인테리어 등의 노후화가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경우 -위생이나 안전의 결함으로 인하여 가맹사업의 통일성을 유지하기 어렵거나 정상적인 영업에 현저한 지장을 주는 경우	-간판교체 비용 -인테리어 공사비용(장비·집기의 교체비용을 제외한 실내건축공사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 단, 가맹사업의 통일성과 무관하게 가맹점사업자가 추가 공사를 실시함에 따라 소요되는 비용은 제외)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지 않는 점포환경개선 : 20% -점포의 확장 또는 이전을 수반하는 점포환경개선 : 40%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가맹점사업자에게 지급(단, 가맹본부와 가맹점사업자간 별도의 합의가 있는 경우 1년의 범위 내에서 분할지급 가능) -가맹점사업자가 가맹본부 또는 가맹본부가 지정한 자를 통하여 점포환경개선을 한 경우에는 점포환경개선이 끝난 날부터 90일 이내에 가맹본부 부담액을 지급 <분할지급 시 절차> 가맹점사업자의 비용 청구(공사계약서 등 공사비용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첨부) → 3차에 걸쳐 가맹본부 부담액을 분할 지급(1차 : 청구일로부터 9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2차 : 1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30%, 3차 : 2차 지급일로부터 60일 이내, 총 부담액의 40%)	점포 환경개선일로부터 3년 이내에 가맹본부의 책임없는 사유로 계약이 종료(계약의 해지·영업양도 포함)되는 경우 가맹본부 부담액 중 잔여기간에 비례하는 부담액은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이미 지급한 경우에는 환수 가능

2. 판매촉진 행사 시 인력지원 등 내역

당사는 가맹점을 개설 또는 운영함에 있어 별도의 지원제도를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다.

3. 경영활동 자문

당사는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성화를 위하여 가맹점사업자의 경영활동에 대한 경영지도를 위하여 경영지도 요원 등을 파견하고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대상 및 내용	절 차	비용부담	비 고
가맹본부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 촉진, 고객관리, 위생 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 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 간, 경영진단 및 지도요원 등의 성명, 소요비 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 지도 후 가맹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 게 경영지도 결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설명	가맹본부 부담	문의 : 031-707-3444
가맹점 사업자 요청 시	상품, 설비(집기), 판매 촉진, 고객관리, 위생 관리, 교육훈련, 회계 등 가맹점 운영 전반 에 대한 경영지도	가맹점사업자 경영지도 요청 → 가맹본부는 경영지도계획서(경영지도내용, 기간, 경영진단 및 지도관계자의 성명, 소요비용 등 포함)를 가맹점사업자에게 제시 → 경영지도 후 가맹 본부 담당자가 가맹점사업자에게 경영지도 결 과 및 경영개선방안을 설명	가맹점 부담	

4. 신용 제공 등 내역

당사는 『철뚝집』 가맹점사업자를 위하여 신용 제공 또는 알선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5. 안정적인 점포 운영을 위한 경영상 지원 내역

당사는 해당 사항이 없습니다.

지원정책	주요 내용	지원조건	지원기간	지원내용	비고

VIII. 교육·훈련에 대한 설명

1. 교육·훈련의 주요내용

당사는 『철뚝집』 가맹점의 운영에 필요한 제반 지식 및 노하우를 귀하에게 전수하기 위하여 교육·훈련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 분	주요내용	교육방식	기 한	비 고
신규교육	· 점포 운영 시스템 교육 및 종업원 관리 교육 · 판매상품의 서비스방법 교육	집단강의 현장실습	가맹계약 체결 후 1개월 이내	필수교육
특별교육	· 새로운 서비스 매뉴얼, 서비스 품질 강화 · 기타 본사의 교육이 필요한 사항		필요 시	
보수교육	· 교육 후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시 재교육 · 가맹점사업자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는 경우 교육		필요 시	

2.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

귀하가 『철뚝집』 가맹사업을 운영하는데 필요한 교육·훈련의 최소시간 및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위: 천원, 부가세포함)

구 분	최소시간	비 용	비 고
신규교육	일 8시간, 15일 교육	[4,400]	· 최초 계약 시 이수 · 필수교육인원 2명
특별교육	개별 산정	실비청구	· 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보수교육	개별 산정	실비청구	· 본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실시 · 가맹점사업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실시

3. 교육·훈련의 주체

교육·훈련은 가맹점사업자를 포함하여 당사가 지정한 자가 직접 받아야 합니다. 다만, 귀하가 직접 받기 어려운 경우에는 본사의 사전 승인을 받아 가맹점을 함께 운영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대신하게 할 수 있습니다.

4. 교육·훈련 불참 시에 받을 수 있는 불이익

기한 내 신규 교육을 받지 않은 경우에는 30일 내로 보수교육을 이수하여야 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가맹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IX. 가맹본부의 직영점 운영 현황

1.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직영점의 명칭 및 소재지

연번	지역	명칭	소재지
1			
2			

2.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평균 운영기간

(단위 : 년, 개월)

2024년 직영점의 평균 운영 기간	비고
-	-

3. 바로 전 사업연도 말 기준 전체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산정기준

(단위 : 천원, 부가세 미포함)

2024년 직영점의 연간 평균 매출액	비고
-	-

[별첨 1. 설비/집기 리스트]

[설비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집기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2. 초도물품 리스트]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

[별첨 3. 판매상품 리스트]

No.	상품·용역명	권장가격(단위:원)	비고
1	철뚝삼겹살	10,000	
2	철뚝우삼겹	11,000	
3	철뚝생삼겹	14,000	
4	철뚝대패목살	13,000	
5	된장찌개	3,000	
6	계란찜	3,000	
7	냉면	6,000	
8	철뚝제육정식	9,000	
9	나주곰탕	10,000	
10	육개장	9,000	
11	볶음밥	3,000	
12	소주	5,000	
13	맥주	5,000	
14	막걸리	5,000	
15	음료수	2,000	

- 본사와의 협의와 점포의 위치 및 규모에 따라 메뉴의 종류와 가격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별첨 4. 가맹금 예치 신청서]

■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지 제5호서식]

가맹금예치신청서

※ 아래 유의사항을 읽고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접수번호	접수일	처리기간	즉시
신청인	상호(가맹점명) (주)브라더푸드시스템(철뚝집 점)		
	성명(대표자)		
	주소(사무소)	전화번호	
가맹본부	상호(영업표지) (주)브라더푸드시스템(철뚝집) *사업자번호: 529-86-01014		
	성명(대표자) 박정환		
	주소(사무소)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복정로134번길 22-1, 101호(복정동)	전화번호 031-707-3444	
예치가맹금	₩	(금	원정)
신청인의 계좌			
가맹본부의 계좌	농협은행	계좌주:	

「가맹사업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6조의5제1항 본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조의7제2항에 따라 위와 같이 예치가맹금을 예치해 줄 것을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예치기관의 장
(지점장)

귀하

예치기관이 주의해야 할 사항

-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예치신청인에게 예치증서를 내주어야 합니다.
-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일부터 7일 이내에 예치가맹금 예치증서를 첨부하여 예치가맹금을 예치한 사실을 가맹본부에 통지해야 합니다.
- 예치기관의 장은 예치가맹금의 예치 및 그 관리로 인해 발생하는 비용을 관리수수료로서 예치가맹금의 수령인이 수령할 금액에서 공제할 수 있습니다.

[별첨 5. 가맹점사업자 현황]

가맹희망자의 점포 예정지 인근 가맹점사업자 현황

가맹희망자의 장래 점포 예정지에서 가장 가까운 가맹점(직영점포함) 10개의 일반정보는 다음과 같습니다.

단,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에서 영업 중인 가맹점이 10개 미만인 경우에는 해당 광역지방자치단체 내의 가맹점 전체 현황을 제공하며, 장래점포예정지가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확정되는 즉시 제공할 예정입니다.

점포예정지역				브랜드명	
구분	상 호	대표자명	소 재 지		전화번호
1					
2					
3					
4					
5					
6					
7					
8					
9					
10					

[별첨 6. 가맹본부 재무상황]



**이 항목은 개인정보·영업비밀에 해당할 소지가 있어
공개되지 않습니다. 비공개된 내용은 가맹본부에 정보공
개서 원본 제공을 요청하시기 바랍니다. -경기도-**